

대학원 의생명시스템학과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의생명시스템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전공분야) 의생명시스템학과는 세계수준의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개의 전공 (융합의생명과학 전공, 융합바이오소재 전공)을 개설한다. 세부전공의 폐지 및 신설은 대학원 의생명시스템학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의생명시스템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 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4조 (우수학생의 유치) 의생명시스템학과 소속 교수들은 의생명시스템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 · 강사 배정

제5조 (교육과정)

제6조 (과목개설) 의생명시스템학과 의 과목개설은 의생명시스템학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학칙에 따라 개설한다.

제7조 (교 · 강사 배정) 의생명시스템학과 강사 배정은 의생명시스템학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학칙에 따라 개설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8조 (지도교수의 선정) 의생명시스템학과 대학원생의 지도교수 선정은 3학기 시작 전후로 선정한다. 입학 시 지도교수가 사전협의 되지 않은 경우, 학과운영위원회를 통해 2학기 동안 임시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제5장 자격시험

제9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의생명시스템학과 대학원생의 종합학력시험의 면제기준은 대학원 학칙을 포함, 다음과 같이 규정 한다.

가. 석사학위의 경우, 1편 이상의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accepted 시 면제됨 (리뷰 가능 및 공동 포함 제1저자만 인정).

나. 박사학위의 경우, 2편 이상의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 (accepted 포함) 또는 IF 10 이상 1편 이상 (2편 중 한편은 리뷰 논문 가능, 단, 공동 포함 제1저자만 인정)

※ 해당 증빙자료(별쇄본, 게재증명서, 게재예정증명서 등)는 종합학력시험 신청 기간 제출

제10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상이다.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으로 한다.

※ 지도교수의 과목을 2개 이상 선택 할 수 없음.

제11조 (외국어시험 과목) 의생명시스템학과 대학원생의 외국어 시험 과목에 대한 규정은 대학원 학칙을 포함,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내국인의 경우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 교과목으로 정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시험 과목은 "영어", "한국어" 로 정한다)

제6장 학위과정

제12조 (학점 이수) 의생명시스템학과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 및 재학 관련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의거한다.

가. 대학원 학칙 제 23조에 준하여 석사과정 이수학점은 33학점이상 (연구지도 9학점 포함), 석박사 통합과정 이수학점은 78학점 이상 (연구지도 18학점 포함), 박사과정 이수 학점은 45학점 이상 (연구지도

9학점 포함)으로 한다.

나. 학부 - 대학원 연계 과정을 통해 진학한 경우 취득 해야 할 학점은 석사과정은 30학점 이상 (연구지도 9학점 포함), 석박사 통합과정 75학점 이상 (연구지도 18학점 포함)으로 할 수 있다.

제 13조 (석사 학위 과정의 변경) 의생명시스템학과의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단,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제 14조 (석박사통합과정의 지속)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의 경우 석사과정 수료 후 박사과정의 지속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박사과정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는 석사과정 졸업요건에 의거하여 졸업할 수 있다.

제 15조 (학위 논문 제출 자격 및 논문 지도) 석박사 학위 논문에 관한 제반 내용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7장, 제 8장에 의거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항목	석사	박사	비고
이수학점	33학점	박사 45학점/통합 78학점	
논문심사 요건	- 신청시기: 졸업 예상일로부터 약 한 학기 전 (매년 3월, 9월)	- 신청시기: 졸업 예상일로부터 약 1년 전 (매년 3월, 9월) - 예심+본심 (1차, 2차 실시) - 영어논문작성	반드시 학위 논문 제출 후 심사 통과 해야 함
역량요건		- SCI (SCIE) 급 주저자 논문의 IF 합 10 이상이어야 함. - 분야별 상위 10% 1편 또는 IF 5이상 1편의 주저자 논문이 포함되어야 함(공동 제 1저자 인정) - 국제 학술대회 영어 발표 1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종합학력시험 (본교실시)	- 종합학력시험 (본교실시)	

	- 단, SCI(E) 급 논문 accept (주저자)에 한해 면제	- 단, SCI(E) 급 논문 IF 10점 이상 accept (주저자)에 한해 면제	
	외국어시험 (본교실시)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의생명시스템학과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에 대한 규정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제14조 (예비발표) 의생명시스템학과 논문 예비발표에 대한 규정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제15조 (논문심사위원) 의생명시스템학과 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및 인원에 대한 규정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제16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연구논문(논문대체) 심사는 학위논문과 동일한 규정으로 진행한다. 단, 석사 학위에만 해당 되며, 내부 전임교원 2인(지도교수 + 교내 전공 교수)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논문대체 제출) 연구보고서(논문대체) 심사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제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 해당 논문의 제본분과 국문 파일을 과사무실로 제출한다.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의생명시스템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운영위원장은 대학원 의생명시스템학과 주임교수를 겸임하여 과를 대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제2조 본 내규는 2026년 3.1. 부터 시행하며, 2025년 입학생도 소급
적용된다.